

가족회사 운영 규정

제정 2017. 6. 30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에서 시행하는 가족회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가족회사”라 함은 현장실습, 취업, 기술지도 및 자문, 공동연구개발, 기술인력 교류,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유기적인 산학협력 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를 말한다.
2. “산업체”란 본교와 협력이 필요한 기업, 연구소, 공공기관, 사회적 기업,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.
3. “지도교수”란 가족회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족회사를 담당하여 관리하는 교원을 말한다.

제2장 운영 및 관리

제3조(주관부서) ① 가족회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가족회사제도 운영·관리의 주관부서는 산학협력처로 하되, 산학협력 활동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후 활동별 담당부서를 정하여 진행한다.

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가족회사의 가입 접수, 승인, 탈퇴
2. 가족회사 DB 구축 및 관리
3. 가족회사 등급관리
4. 기타 가족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가입기준) 가족회사로 가입하고자 하는 산업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.

1. 본교와 산학협력을 희망하거나 참여 의지가 있는 산업체
2. 본교와 산학협력 추진 방향 및 목적이 부합하는 산업체

제5조(가입 및 승인) ① 가족회사 가입을 원하는 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본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가족회사 가입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또는 가족회사 협약 체결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

2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② 주관부서에서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가족회사 지도교수 배정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가족회사 가입을 완료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.

1. 휴업 및 폐업이 확인된 기업
2. 생산적 활동이 전혀 없는 유명기업
3.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기업

제6조(협약서) ① 협약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되,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.

제7조(협약서 및 증서발급) ① 가입이 완료된 가족회사에 대하여는 가족회사 증서(별지 제4호 서식), 가족회사협약서(별지 제5호 서식)를 발급한다.

② 협약서 및 증서 분실 등의 이유로 가족회사가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주관부서는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재발급을 할 수 있다.

제8조(해지 및 탈퇴)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족회사 탈퇴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가족회사가 탈퇴 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제출한 경우
2. 가족회사가 부도·법정관리·폐업 등의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
3. 가족회사의 대표이사가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경우
4. 가족회사가 사기 등 명예를 실추하여 더 이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

제9조(가족회사 지원) 본교는 가족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기술지도 및 자문
2. 공용장비의 이용
3. 산학협력협의회 및 교류회 개최
4. 산업체 교육 및 인력교류 지원
5. 기타 가족회사 지원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등급관리) ① 본교는 가족회사의 산학협력 실적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관리할 수 있으며,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및 우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

② 등급관리기준 및 등급별 혜택은 산학협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체결된 협약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3호 서식]

접수번호			
가족회사 탈퇴 신청서			
업체(기관)명		대표자	
사업자등록번호		연락처	
주생산품		업태, 업종	
주 소	(우 : -)		
실무 담당자	성명		부서/직위
	연락처		E-mail
산학협력 참여내역			
탈퇴사유			
<p>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대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「대경대학교 가족회사」에 탈퇴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표자성명 (직인날인 또는 서명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경대학교총장 귀하</p>			

<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>

수집된 개인정보는 대경대학교 가족회사 탈퇴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.

1. 수집하는 개인정보(필수항목) : 성명, 부서/직위, 연락처, E-mail
2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대경대학교 가족회사 탈퇴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동의 / 부동의

*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이를 거부할 경우 가족회사 탈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
제 호



가족회사증서

업체(기관)명 :

대 표 :

귀 사(기관)는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우수기업 (기관)으로서 우리 대학과의 산(관)학협력을 통하여 우수한 인력양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대경대학교 가족회사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.

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

대 경 대 학 교 총 장

가 족 회 사 협 약 서

대경대학교와 {{업체명}}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)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현장 연구 및 재학생들의 실무교육을 촉진시키고 산학 협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호 평등하고 우호적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상호간의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고, 상호 성장발전과 교육의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사항)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하고, 내용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
- ① 공동연구 활동 및 지식과 기술 등의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
- 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(과)과정을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
- ③ 현장실습(인턴십) 참여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
- ④ 신규 직원 채용 시 대경대학교 졸업생 채용(우대) 협력에 관한 사항
- ⑤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사원연수에 관한 사항
- ⑥ 양 기관의 인적자원과 보유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
- ⑦ 양 기관의 소장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
- ⑧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

제3조(협약 이행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추진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협약이행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.

제4조(효력) 본 협약서는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, 상호간 해지의 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본 협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로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직인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. . .

대경대학교총장

○ ○ ○

{{업체명}} {{대표직함}}
{{대표명}}